

성폭력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1 피해자들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를 돕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뻔뻔한 태도로 생활을 영위하고, 피해자는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침묵이 강요되는 한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됩니다.

법적 해결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주변의 격려를 이끌고 가해자의 잘못을 명백히 하여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2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다른 피해를 예방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여타의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으며, 성폭력 피해는 친밀한 관계에서 반복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 해결을 통해 성폭력이 처벌받을 범죄임을 분명히 하여 다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3 사회적 책임과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왜곡된 성의식과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성폭력을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적 해결은 사회적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도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피해를 지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만으로 성폭력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제도의 개선은 법적 해결을 통한 피해자 지원의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수사, 재판 환경의 개선과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다섯 분의 성폭력 피해생존자와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7년 정기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변화를 이끕니다.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여 우리의 뜻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www.sisters.or.kr

cytogether.cyworld.com

참여하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소시효 관련 법안 (2007년 9월 현재)

-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 진행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의2 신설
-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맹행규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9조 제2항 신설
-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 진행
신명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2조 제1항 단서 신설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공소시효 제도를 현행보다 한 단계씩 강화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최구식의원 대표발의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T 02-338-2890~2 F 02-338-7122
홈페이지 www.sisters.or.kr 이메일 ksvrc@sisters.or.kr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가 필요합니다

상담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례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 성폭력 상담 중
공소시효가 지난 상담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가 고소기간을 놓쳤거나
고소 의사가 없었던 예외적인 사안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의 문제는 피해자들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소시효 제도에 문제제기하여, 제도적 보완은 물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까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범죄 행위 후 법률이 정한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첫째, 범죄자도 그동안 심리적 고통 등을 받은 이상 처벌 필요성이 감소되었고 둘째, 증거가 훼손되고 기억이 희미해져 처벌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과연 성폭력 가해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될 만큼 심리적 고통을 받았을까요?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가해자가 범죄자로서 비난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고통 속에 살아가기 보다는 피해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든 증거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까요?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증거를 채취하여 변질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다른 범죄와 똑같이 공소시효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가해자의 법적안정성'을 '법적 해결'을 통한 피해자의 치유 및 정의 보다 우선하는 결과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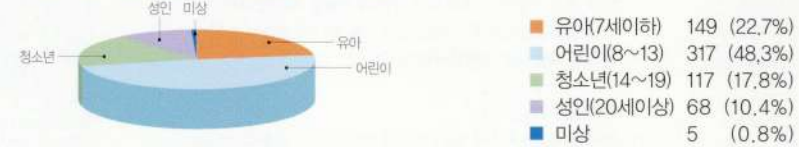
통계를 통해 본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피해의 특성

■ 공소시효 지난 상담 건 수

2004~2006

연도	총 성폭력상담건수	공소시효지난 건
2004	2,362 (100)	153 (6.5%)
2005	2,151 (100)	246 (11.4%)
2006	2,317 (100)	257 (11.1%)
총 계	6,830 (100)	656 (9.6%)

■ 공소시효 지난 상담사례의 연령별 피해자 현황



■ 공소시효 지난 상담사례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공소시효 지난 사례는 총 656건으로 약 9.6%에 달하며 공소시효 지난 상담 사례의 경우, 연령별로는 13세 미만(71%), 피해자/가해자 관계별로는 친인척(61.6%)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공소시효 - 왜 공소시효를 넘기게 될까요?

1 | 나이가 어린 경우, 성폭력 피해임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 성폭력의 경우, 단지 '무언가 안 좋은 일' 정도로 느낄 뿐 '성폭력'이라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이후 성년이 되어가면서 성폭력이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 친족·친인척 간 성폭력은 피해로 인식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자연스러운 애정표현을 가장하여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해당행위가 성폭력인지 깨닫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친인척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무마시키려하거나 사건을 덮어두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변에 말하고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에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자책감과 수치심이나 피해자에 대한 주변의 비난 때문에 피해자는 쉽게 주변에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주변사람들 역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를 갖지 못한 채 피해사실을 알고도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지 못하고 공소제기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 대부분의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므로 법적 해결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의 75~80%는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법적 해결' 보다는 '사과'를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가해자가 오히려 뻔뻔스럽게 나와서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 법적 해결을 결심하기까지 시간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성폭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종종 일어나고, 성폭력 피해가 공개되었을 때 사회적 분위기도 피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적 해결을 결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처하는 불리한 상황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직후부터, 예외 없이 짧은 공소시효를 기산하고 있는 우리의 공소시효제도는,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 해결을 막아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가와 법이 외면하는 결과가 됩니다.

외국의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제도를 살펴봅시다

1. 우리의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기간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짧습니다.

	한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일리노이주, 캔자스주, 메릴랜드주 등
강간	7년	20년	10년	공소시효 없음	10년	공소시효 없음
살인	15년	30년	25년	공소시효 없음	10년	공소시효 없음

2. 외국의 경우, DNA증거 보존, 유아 성폭력 등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도 공소제기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정지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18세)이 되는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며 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어 성폭력 피해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시효가 기산됩니다.

◎ 미국의 경우

• 미국의 30개 주에서는 DNA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DNA 증거는 시간이 지나도 소멸, 변질되지 않고 범죄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를 연장·배제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시효기간을 연장하고 성년이 된 후부터 기산하거나, 혹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주가 많습니다.

공소시효 정지, 연장	루지애나주(10년, 성년이 된 후부터 기산), 몬태나(10년, 성년이 된 후 기산)
공소시효 배제	미네소타, 미시시피, 뉴욕, 오클라호마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